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7. 29(수) / 총 2매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유지만 • ☎ (044) 201-3321, 333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임대차 신고제가 ‘21.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

- ☐ 임대차신고제가 ‘21.6월에 시행되어도,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‘20.8월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

* ‘20.7.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가결

- ☐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,

-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틀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.

*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사법인 『주택임대차보호법』에 반영 추진중

- 특히,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- 따라서,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.

-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성립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.
- 임대차신고제는 현재 시스템 설계 중으로, 연내 구축에 착수하여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33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